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사 용 자: _____

운용관리기관: _____ 유안타증권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5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3.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4.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법에서 정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법에서 정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10. "대기성자금"이란 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이하 "기록관리업무"라 합니다)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이하 "기록관리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위탁 등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노동부의 신고·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5 조 (사용자 및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록관리업무 및 제6조 제2항에 의한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반기 () 회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 방침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의 구성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의 2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자보호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 ⑤ 회사는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 6 조의 3 (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6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가 제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 6 조의 4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6조의3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제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규약에 설정된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 ③ 제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회사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의 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 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익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의2 제4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가입자가 제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 ④ 가입자가 제6조의4 제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부담금 납입 익영업일에 대기성자금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익영업일에 대기성 자금으로 투입
-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의 6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

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6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의 7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택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4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4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⑥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적립금 운용지시)

- ① 가입자는 매() () 회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운용방법 중에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지시(이하 "운용지시"라 합니다)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2.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방법
 3. 가입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통하여 표시한 운용지시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 ② 운용지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 운용지시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회사에 납입하는 부담금의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시 운용지시는 정기 운용지시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금융상품을 가입자가 임의로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부속협정서 제2조 제2항 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에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6조의5가 적용되며, 만기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전까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개별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용대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했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⑦ 가입자가 수시 운용지시에 의하여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2항 제4호에서 설정한 부담금 투자 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시 운용지시 이후에 정기적인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수시 운용지시가 아닌 현재 설정되어 있는 부담금 투자 비율대로 운용됩니다.
- ⑧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선정 및 변경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판매 중단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가입자는 운용지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 ⑨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른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⑩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부담금의 납입)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 ② 사용자는 제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외에도 기존 퇴직금 사내유보금의 이전, 퇴직일시금신택(퇴직보형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및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및 급여이전 등에 의한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제4호의 사용자부담금을 규약에 정하여진 기일(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일 다음날부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을 최고(독촉)하여야 합니다.
- 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하 "부담금 명세"라 합니다)를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부담금 납입연체시의 취급)

- ① 이 계약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기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독촉을 해야 합니다.
- ②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의 납입을 지연 또는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연-연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지연-연체기간 중의 퇴직급여 지급은 개인별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납입지연연체된 부분에 대한 급여 등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운용지시의 전달 및 기록)

- ①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 ② 사용자는 회사가 제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회사는 이 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매년 () 회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정보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 ③ 회사는 제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12 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번, 평균임금, 자격취득시기 및 상실키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오류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가입자 정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된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합니다)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 급여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간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 15 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단, 중도인출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②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③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에 따릅니다.

제 16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교육 실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3.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4.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 중 일부를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급여의 지급)

- ① 가입자의 퇴직 등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및 운용결과에 따른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법 제24조에 의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다

른 자산관리기관으로 급여의 이전(이하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을 위한 연금자산의 매각 및 송금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④ 제4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요청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 이전)

- 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가입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연금규약 및 동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4조(면책)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중도해지)

- ①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②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일반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재내용상 거짓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이전,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22 조 (수수료의 지급)

- ① 사용자는 부속협정서에 따라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가 자산관리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자는 수수료를 지급을 위한 운용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수수료 납부를 위한 자산매각순서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순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 23 조 (인감신고)

-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사·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또는 지연
3.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 25 조 (부속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부속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계약의 승계)

- ①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제 27 조 (조항의 해석 및 변경 등)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 및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사용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⑥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을 회사의 고객센터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서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⑧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시시켜야 합니다.

제 28 조 (관할법원)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0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1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하고, 2013년 7월 25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② 2013년 2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7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④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말 기준 회사와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의 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을 이 계약서의 시행일로 하여 증빙서류없이 할인을 적용합니다.
- ⑤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혜택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제 3 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 됩니다.
-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3년 6월 9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회사명): (인)

(주 소):

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

[부속협정서]

_____(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번호 제 05-030-5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_____년 ____월 ____일에 체결한 운용관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 1 조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위탁)

- ① 회사는 계약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업무 및 계약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기록관리기관 :
 2. 계약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문교육기관 :
- ②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위탁시 계약서 제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제항 각 호의 기관에 부과해야 합니다.

제 2 조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기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한 것
 4. 다음과 같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나.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함),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제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 및 ETF를 포함하며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표기함)
 11.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 가. 운용방법에 관한 이자, 배당 및 그 외 이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나. 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5.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 비용의 명세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정보
 6.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7. 기타 가입자 등이 운용의 지시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 3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가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에 관한 사항
 -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라.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절차
 -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 바. 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 사.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제도운용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입시기 및 납입상황
- 나.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 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라. 표준형DC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 가.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 나. 중도인출 처리절차
 - 다.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계약이전절차
- ② 회사는 가입자에게 연()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3조 제1항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가입자교육은 서면 또는 집합교육으로 교육한다.
- ④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육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2. 집합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기타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제 4 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내용)

- 회사는 계약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장
 -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남녀별, 합계)
 - 전기말 가입자수, 자격취득자수 자격상실자수, 금기말 가입자수
 - 다. 적립금 현황
 -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및 자산관리기간별 부담금 및 적립금 총액
 - 라. 적립금 운용 상황(운용방법별 현황을 포함)
 - 각 운용방법별로 운용되는 적립금의 현황
 - 마.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급여종류별 수급 및 담보대출, 중도인출 현황)
 - 일시금 및 연금지급 인원수 및 금액,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을 요청한 인원수 및 해당 금액

제 5 조 (수수료의 종류)

- ① 사용자가 회사에게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 제22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매 사업연도 말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까지의 적립금 자산 평가액 평균 잔액(이하 "적립금 평잔"이라 합니다)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적립금 평잔	수수료율	수수료 산출 예시
5억원 이하	0.26%	적립금규모 700억원가정시 운용관리수수료 = 5억×0.26% + (30억 - 5억)×0.23% + (100억 - 30억)×0.19% + (500억 - 100억)×0.15% + (700억 - 500억)×0.11%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23%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19%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5%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1%	
1,000억원 초과	0.08%	

- 가.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 평잔으로 하고 가입자에게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 평잔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적립금 평잔에 적용할 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 각각의 적립금 평잔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나.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부터의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초년도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계약초년도 중 계약해지/이전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 합니다.)
- 다.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이전일, 중도해지일의 계약이전신청금액, 중도해지신청금액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이때 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사용자별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당해 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라.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경과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수수료에 대한 장기할인은 제외됩니다.)

계약연수	할인율
2차년도 ~ 4차년도	10%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 9차년도	12%
10차년도 이후	15%

2.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운용관리수수료

제1항의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적립금 평잔	중소기업 (할인율 10%)	사회적기업 (할인율 80%)
5억원 이하	0.23%	0.0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21%	0.05%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17%	0.04%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4%	0.03%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0%	0.02%
1,000억원 초과	0.07%	0.02%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1호의 기준에 관한 차등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호 가목의 부과기준을 수립하여, 원리금보장형상품(예금, RP, 증권금융예수금, ELB/DLB 등)으로 운용된 적립금 평잔에 대해 연0.01%p 할인금액을 산출하여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할인금액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구분	할인율	할인금액 산출 예시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금액 (원리금보장형상품)	0.01%p	원리금보장형상품 적립금 규모 500억원 가정시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금액 = 500억 × 0.01%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이 1,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④ 사회적기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을 10% 할인 한 제1항 제2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을 80% 할인한 제1항 제2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당사의 여타 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3.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의 만료, 취소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제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대기업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제 6 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 ①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② 수수료의 납입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월 이내
-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10일전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 ④ 계약이전, 중도해지 등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 ⑤ 계약서 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자산매각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합니다.
1. 현금성 자산
2. 환매조건부채권(1년물)

3. MMF

4. 추가연계증권(ELS)

5. 국내수익증권(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6. 해외수익증권(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7. 단일 또는 복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8.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되거나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9. 정기예금

10. 채권 등 실물 유가증권

11. 제1~10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매각하기로 합니다.

- ⑥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납입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 7 조 (계약해지시 수수료의 정산)

- ① 계약해지시에 정산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 전날까지의 적립금 평잔금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경과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2. 미청구된 기타 수수료

해지일까지 미청구된 수수료 금액

-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수료 명세를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기타)

-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영업일은 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당해 기한은 그 직전의 회사의 영업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회사명):

(인)

(주 소):

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서]

_____(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 "운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유안타증권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계약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가입자로 합니다. 다만, 장기파견 또는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교육내용)

- ① 사용자가 회사에게 위탁하는 교육내용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 조 (교육방법 및 횟수 등)

- ①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부 우편 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기타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의 집합교육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회사는 합의 하에 별도의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서면교육 중 교부의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④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회 실시합니다.

제 6 조 (수수료)

- ①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강의장 대여료, 교육자료 개별발송시 발송비, 회사에서 제공한 교육자료 이외의 추가자료 제작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한 추가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교육의 원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사의 통보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협조의무)

사용자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비밀유지)

- ①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일반적인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 ③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 9 조 (면책)

-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의 내용 중 사용자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교육방법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공하거나 수정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로 교육자료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재위탁)

회사는 교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사용자는 교육방법의 변경 등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초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의 종료 전에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제 13 조 (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사용자(회사명):

(인)

(주 소):

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